

3. 한국거래소 규정

-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 등 취득·재매각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장법인의 영문공시 공시 시한 정비)
- 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전환주식의 전환 청구 시 CB와 동일하게 시장신고사항으로 신고)
-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모든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시장 개장 시각 조기화)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024/11/13 개정 · 2024/12/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의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2024. 1. 23.)과 관련하여 CB 등의 유통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영문공시 제출시한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 등 취득·재매각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6)(라), 제31조 제7호)
 - CB, BW, EB에 대해 만기 전 취득 시 및 재매각 시 각각 투자자들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시의무 신설
 -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및 EB(교환사채)도 CB 대체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 기 공시한 내용 중 만기 전 취득금액 및 재매각금액의 50% 이상 변경시 발행공시와 동일하게 불성실공시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CB·BW·EB의 경우 기 공시내용 중 발행금액 50% 이상 변경시 공시변경으로 제재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영문공시 제출시한 확대(제48조 제1항)
 - 상장법인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문공시 후 영문공시 제출시한을 기존 5일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지배구조보고서 영문공시 시한과 동일)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3) 관련 규정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2024/11/14 개정 · 2024/12/1 시행)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공시 제출시한 연장(제18조의4 제1항)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영문공시 제출시한을 기존 국문공시 제출 이후 5매매거래일에서 3개월로 확대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24/11/13 개정 · 2024/12/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의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2024. 1. 23.)과 관련하여 CB 유통 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상장법인의 영문공시 공시 시한 인지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영문 공시 시한 정비를 위함

2) 주요 내용

□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 취득 · 재매각 등에 대한 공시 · 신고의무 부과(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6)(라), 제29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 제8호 · 제9호 · 제10호)

- CB, BW, EB에 대해 만기 전 취득 및 재매각시 투자자들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시의무 신설
 - BW(신주인수권부사채), EB(교환사채)도 대체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 기 공시한 내용 중 만기 전 취득금액 및 재매각금액의 50% 이상 변경시 다른 공시와 동일하게 불성실공시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CB·BW·EB의 경우 기 공시내용 중 발행금액 50% 이상 변경시 공시변경으로 제재
- CB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전환주식에 대해 전환가액 결정 · 조정, 전환청구시 CB와 동일하게 시장신고사항으로 신고하도록 규정

□ 영문공시 공시시한 정비(제46조)

- 상장법인이 공시시한을 쉽게 계산하고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시시한을 한글공시 후 1주일 이내에서 5매매거래일 이내로 변경
- 영문번역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공시의 영문공시시한을 예외적으로 3개월로 확대
 - 대상공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자율공시)

3) 관련 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2024/11/14 개정 · 2024/12/1 시행)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공시 제출기한 연장(제21조의4)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영문공시 제출기한을 기존 국문공시 제출 후 5매매거래일에서 3개월로 연장

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2024/11/13 개정 · 2024/12/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의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2024. 1. 23.)과 관련하여 CB 유통 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 취득 · 재매각 등에 대한 공시 · 신고의무 부과(제6조 제2호 라목(4), 제18조 제7 · 8 · 9 · 10호)
- CB, BW, EB에 대해 만기 전 취득 및 재매각시 투자자들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시의무 신설
 - BW(신주인수권부사채), EB(교환사채)도 대체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 CB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전환주식에 대해 전환가액 결정 · 조정, 전환 청구 시 CB와 동일하게 시장신고사항으로 신고하도록 규정

3) 관련 규정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2024/11/14 개정 · 2024/12/1 시행)

- 전환사채 등(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 포함), 교환사채)의 만기 전 취득 또는 재매각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근거 마련(제11조 제2호 나목)
 - 전환사채 등의 취득금액 또는 재매각금액이 기 공시내용 대비 50%이상 변경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4/11/1 개정 · 2024/11/4 시행)

1) 개정 이유

- 개장시각 조기화, 이론가격 산출방식 개선, 코리아밸류업지수선물상장,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확대, 외국인 통합 계좌 설정 · 변경사항의 당일 야간거래 적용 등을 위해 관련 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모든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시장 개장 시각 조기화(제64조, 별표 1의2)
- 파생상품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여 주식시장의 개장 초 변동성을 완화하고, 위험관리 편의 제고를 위해 조기개장 대상 상품을 모든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 추진
- (기존)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위클리 포함),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 (개정)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 전체(해외 주식 관련 파생상품인 유로스톡스50선물 제외)

[조기개장 확대 대상상품]

세부시장구분		대상상품	
주 식 상 품	코스닥글로벌선물	코스닥글로벌선물	
	섹터지수선물	코스피200 에너지/화학 코스피200 정보기술 코스피200 금융 코스피200 경기소비재 코스피200 건설 코스피200 중공업 코스피200 헬스케어 코스피200 생활소비재	코스피200 철강소재 코스피200 산업재 코스피고배당50 코스피배당성장50 KRX BBIG KRX 2차전지 TOP 10 KRX 바이오 TOP 10 코리아 밸류업(상장예정)
	주식선물	기초자산 전체	
	ETF선물	KODEX삼성그룹ETF TIGER헬스케어ETF PLUS고배당주ETF(명칭변경)	TIGER차이나CSI300ETF KODEXTop5PlusTRETf TIGER미국나스닥100ETF
	변동성지수선물	변동성지수선물	
	주식옵션	기초자산 전체	

* 선물상품의 경우 선물스프레드거래 포함

-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이론가격 산출방식 개선(제102조의3,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15, 별표 16, 별표 19, 별표 27)
 -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정밀한 이론가격 산출을 위하여 기간구조가 반영된 이자율을 이용해 이론가격 산출
 - (변경 전) CD금리
 - (변경 후) 콜금리, CD금리 및 CD금리 기반 이자율 스왑금리를 이용하여 계산한 무이표금리
- 코리아밸류업지수선물 상장(제75조, 별표 1의3, 별표 6)
 -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을 지원하고, 투자자에게 신규 투자기회 및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코리아밸류업지수선물 상장 추진
 -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2024. 9. 30.), 연계 ETF 등 금융상품 출시(2024년 하반기 예정)
- 주식선물 · 옵션 및 ETF 선물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حد도 확대(제162조의2, 별표 1의4, 별지 제13호의4)
 - 기관투자자 등의 개별주식 관련 위험관리 수요 확대와 ETF 선물에 대한 자산운용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식선물 · 옵션과 TIGER 미국나스닥100ETF선물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حد도를 확대

[미결제약정수량 보유حد도 개선사항]

구분	기존	개정	
주식선물 · 옵션	기초주권 보통주식 총수의 0.5%	기초주권 보통주식 총수의 3%	
TIGER미국나스닥100ETF선물	5,000계약	일반투자자	10,000계약
		ETF운용사	50,000계약

- 외국인 통합계좌 설정 · 변경 신고시한 단축(제114조의3)
 - 회원의 외국인 통합계좌 설정 · 변경사항이 당일 야간거래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신고시한을 현행보다 60분 단축

[외국인 통합계좌 설정 · 변경 관련 개선사항]

구분	기존		개정	
	설정 · 변경시한	반영시점	설정 · 변경시한	반영시점
외국인 통합계좌	장종료 시점부터 90분 이내	다음 정규거래	장종료 시점부터 30분 이내	당일 야간거래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